

駐韓國代表處經濟組 函

地址：6th FL., Gwanghwamun Bldg.,
149, Sejong-daero, Jongno-gu, Seoul
03186, Korea

承辦人：吳宛芳

聯絡電話：82-2-6329-6053

電子郵件：wfwu@sa.moea.gov.tw

受文者：經濟部國際貿易署

發文日期：中華民國115年7月30日

發文字號：韓經字第1150730032號

速別：普通件

密等及解密條件或保密期限：

附件：如文(韓方正本資料另以外交郵袋寄送)(d98838_韓經字第1150730032號-1.pdf)

主旨：有關韓國對我國產製固態氫氧化鈉啟動反傾銷調查案，謹
報請鑒察。

說明：

一、依據韓國產業通商部貿易委員會(KTC)本(2026)年7月30日
傾銷調查支援課第555號函辦理；相關文號：本組本年4月8
日韓經字第1150408011號函。

二、來函略以，韓國KTC通知旨案，依據傾銷事實初步調查結
果，計算出接受調查對象供應商之臨時反傾銷稅率如下：

(一)中國

- 1、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及相關企業(Befar Group Co., Ltd.、Binhua
Haiyue (Qingdao) Trading Co., Ltd.): 3.66%;
- 2、Skyey Impex Limited: 22.21%;
- 3、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
19.93%;

4、其它供應商：17.58%。

(二)臺灣：

1、台灣塑膠工業股份有限公司(Formosa Plastics Corporation)：38.89%；

2、其它供應商：38.89%。

(三)倘受調查供應商有意見，敬請於本年8月5日(星期三)韓國時間下午6時前，向該委員會承辦人提交意見書
(leesd84@motir.go.kr；82-44-203-3865)。

(四)檢送KTC來文及「初步傾銷稅率調查報告(公開本)」1份，併供鈞參。

正本：經濟部國際貿易署

副本：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잠정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통지 및 의견조회

1. 무역위원회공고 제2026-7호,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2026.4.7.)」 관련입니다.
2. 상기 조사 건에 대한 덤프사실 예비조사 결과, 조사대상공급자 등에 대하여 산정된 잠정 예비덤핑률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8.5.(수) 18:00까지 무역위원회 덤프조사지원과로 의견서(공개본, 비공개본 각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잠정 예비덤핑률 조사보고서(공개본) 1부.

2. 잠정 예비덤핑률 산정내역(비공개본, 공급자별 해당내역 발체) 각 1부. 끝.

무 역 위



수신자 신청인 및 그 대리인, 조사대상공급자 및 그 대리인, 우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우한국타이베이대표부

공업사무관 이선덕 파장 전일 2026. 7. 29.
김영운

협조자

시행 덤프조사지원과-555 (2026. 7. 29.)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여진동)

/ <https://www.motir.go.kr>

전화번호 044-203-3865

팩스번호 044-203-4813

/ Leesd@motir.go.kr

/ 비공개(5,7)

< 목 차 >

I. 예비조사 개요	1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람국 및 공람자	1
2. 조사대상물품	3
II. 덤프시설	5
1. 덤프시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5
2. 덤프시설 조사경과	6
3. 공급자별 덤프시설 조사	8
< 중 국 >	12
가. 동루이 및 그 관계사 (대응)	12
나. 스카이 임팩스 (비대응)	27
다. 유니라이온 (비대응)	30
라. 그 밖의 공급자	32
< 대 만 >	35
가. 포토사 (비대응)	35
나. 그 밖의 공급자	38
4. 덤프시설 예비조사 결과 종합	39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잠정] 예비덤프를 조사보고서

2026. 7. 28.

무 역 조 사 실
덤프조사지원과

I. 예비조사 개요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가. 신청취지

- '26.3.17. 주식회사 영진은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덩핑 수입(신청인 제시 덩핑률 : 중국 20.03%, 대만 34.32%)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덩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함

나. 신청인

○ 주식회사 영진

- 대리인 : 법무법인 윤림(변호사 김태우), 더인더내셔널트레이드컨설팅(회계사 김종탁)

< 신청인 현황 >

('25년 기준)

구분	신청인	주식회사 영진
회사설립 연·월·일		1978.8.1.
대표자		박지성
주 소	본사·공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38 (삼정동)
자본금		1,530백만원
배출액	총매출액	35,909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 생산제품		고체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규산염 등의 화학약품
종업원수		xxx명

* 자료 : 국내산업 덩핑서

다. 조사대상물품 공급국(또는 관세영역) 및 공급자

공급국 / 관세영역	공급자 (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시 덩핑률	대 응 여 부
중 국	동루이(Shandong Bo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및 그 판매사		대 응
	스카이 임팩스(Skyey Impex Limited)	20.03%	비대응
	유니라이온(Tianjin Union Supply Chain Co., Ltd.)		비대응
대 만	포모사(Formosa Plastics Corporation)	34.32%	비대응

○ 조사대상공급자 대리인

- 중국동루이 및 그 판매사 : 범플라스틱스 신이(변호사 심규형, (주)인티(회계사 김동준)
- 중국스카이 임팩스, 유니라이온, 포모사 : 대리인 미지정(조사 비대응)

라. 조사대상기간

- 덩핑사실 조사대상기간 : '25.1.1.부터 '25.12.31.까지
-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 '22.1.1.부터 '25.12.31.까지

1)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를 아니라 대외부에 관해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국가적 관세영역'의 가입을 허용하며(여타의 경우 제12.3조), 대만은 해당 조항으로 WTO에 가입하였는데, WTO 반덤핑협정을 포함한 다자간 무역협정은 대만 관세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한편, 마라케쉬 협정은 '국가'라는 용어에 국가적 관세영역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WTO는 공식발간자료(관기별 무역규제조치 현황 통보문 등)에서 '국가(country)'와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을 실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조사항은 이러한 국제실무 관행과 대만의 WTO 회원법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본 보고서에서 대만을 '관세영역'으로 지정함

* 대만의 WTO 회원명 :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1981 'Chinese Taipei')

2. 조사대상물품

가. 품명 : 고체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²⁾ solid)

- 편서품분류(FSK) : 2815.11.0000³⁾
- 관세율 : 기본세율 80%, WTO 협정세율 5.5%(대), 한-중 FTA 협정세율 0%(중국)

나. 정의 :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

다. 물리적 특성 : 백색의 무른 고체로,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아 수용액이 되는 조해성(潮解性)이 강하고, 대표적인 강염기(강알칼리)⁴⁾ 물질로서 유지력(기름) 및 단백질 분해능력이 탁월함

라. 용도 : 범용 무기화학제품⁵⁾인 조사대상물품은 세척 및 중화(pH 조절) 등의 기능이 요구되는 각종 산업 분야⁶⁾에 널리 사용됨

- 용도 예시 : 비누·세제 제조, 공정 pH 조절, 신성폐수 중화 등의 수처리, 금속 표면처리, 섬유류의 가공 및 정련, 펄프·제지의 정련 등

마. 제조과정 : 원재료인 농도 5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온에서 농축하고, 냉각·고체화한 후 성형, 포장을 거쳐 생산함

2) 강부식성인 수산화나트륨은 흔히 '가진(苦澁)소다'로도 불리며, 세계화학기구(WCO)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HS코드 2815.11(액체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품목명칭을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로 명명하고 있음

3) 조사대상물품의 편서품분류(FSK) 정의

편서품분류	한 글	정 의	정 문
2815 11 0000	수산화나트륨 [가진(苦澁)소다]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2815 12 0000	고체	Solid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In aqueous solution (soda lye or liquid soda)	

4) 물 또는 산(Acid)과 접촉 시 반응열을 일으키며 강력한 반응하므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5) 황산,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 등과 같이 대량 생산·소비 재료를 갖추고 전방산업 전반에 기초원료로 투입되는 무기화학물질로서, 제품 간 차별성이 낮아 수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가격의 핵심 요인임

< 제조과정 >

1단계	원료 투입	원재료인 농도 5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과 농축기에 공급
2단계	농축	원재료를 고온·저압 상태의 낙하막막식 농축기 ⁸⁾ 에 통과시켜 수분을 제거하고 농축하는 핵심 공정
3단계	고체화·성형 ⁹⁾	고농도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회전하는 냉각 롤러 표면에 얇게 도포한 후 빠르게 식혀 고체화하고, 낱날로 끊어내 조각 형태로 생산
4단계	포장·저장	고농도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타워 상단에서 분사하여 냉풍에 의해 균해 미세한 방울 형태로 생산 등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습기에 민감하므로 밀폐된 용기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저장

바. 유통경로 : 조사대상물품은 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수요자가 직접 수입함

< 조사대상물품 주요 유통경로 >



6) 제조과정은 보편적인 공정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생산자별로 적용기술 및 공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산물의 정의 및 특성 등이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함

7) 열수(스팀)를 정제 후 전기분해하여 농도 3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만든 뒤, 증발설비(Evaporator)에서 물을 제거하여 농도 50% 내외로 농축시킨 것

8) 낙하막막식 농축기 : 액체를 얇은 막 형태로 롤러본내 불완전막관으로 증발시켜 농도를 높이는 장치

9)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형태는 플레이크, 펠, 결정 따위 등으로 다양하나,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이러한 형태와는 무관하여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함

II. 덤핑사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① ... 조사대상공급자 선정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 수를 수입량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중
 - ... 관련된 수출자 수가 너무 많은 경우 당국은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며, 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출량이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 조사개시 당시 조사실은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의 각 공급국 및 관세영역, 공급자별 대한민국 수출물량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공급자를 선정하고, '26.4.7. 관보에 게재하였음

-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는 중국의 동루이 및 그 관계사, 스키이 일렉스, 유니리이온 3개사, 대만의 포모사 1개사이며, 선정된 공급자의 대한민국 수출물량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공급국 및 관세영역의 대한민국 총수출물량의 xxx%(중국), xxx%(대만)를 차지함

○ 조사개시 당시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총 4개사 가운데 중국의 동루이 및 그 관계사만이 조사참여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외 3개사(중국 2개사, 대만 1개사)는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

○ 한편, 조사실은 개시 당시 선정된 공급자뿐 아니라 그 밖의 공급자도 덤핑사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참여 방법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하였으나, 중국과 대만의 그 밖의 공급자 중 어느 기업도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10) 본 건 조사개요, 조사참여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기간(26.4.7~4.28)까지 약 3주간 등을 전자편보, 무역위원회의 홈페이지, 공급국 정부 및 관세영역 당국 대상 서한 등을 통해 안내(26.4.7. 제1차 또는 통지함)

2. 덤핑사실 조사경과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① ...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결의를 하는 때에는 결의시 반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부여위고사) 제7조
 - ①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결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 해외공급자에게 결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결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천체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총 연장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중
 - 반덤핑조사에 사용되는 결의서를 받은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이 주어진다. 동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청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은 가능한 한 허용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중
 - 반덤핑조사의 결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 조사실은 본 건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26.4.7.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음(당초 답변기한 : '26.5.18.)

- 본 건 조사에 참여한 유일한 조사대상공급자인 중국의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26.5.26.까지 7일 연장¹¹⁾하고 이를 통보('26.5.11.)하였음

-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연장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26.5.26.)하였음

○ 조사실은 본 건 관련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의견제시 기간 : '26.4.7.-5.6.)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 조사실은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답변서 분석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6.6.17. 제1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당초 답변기한 : '26.6.24.)

-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요청 사유 및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답변기한을 절의 항목별로 차등 연장(2일 연장 16개 항목, 6일 연장 13개 항목)하고, 이를 통보('26.6.22.)하였음

-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절의 항목별로 연장된 기한 내에 제1차 보충 답변서를 제출(각각 '26.6.26., '26.6.30.)하였음

○ 조사실은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제1차 보충답변서 분석 결과, 제차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6.7.2. 제2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

-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기한 내에 제2차 보충답변서를 제출('26.7.7.)하였음

○ 조사실은 예비답변에 앞서 예비덤핑률 산정내역을 조사대상공급자(대용 공급자 포함), 공급국 정부 및 판매영역 당국,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의 의견제시 기간('26.7.29.-8.5.)을 부여하였음(예정)¹²⁾

11) 7월 연장 후 답변기한은 '26.5.25.이나, 해당 일자가 공휴일인 관계로 관세법 제6조에 따라 이일로顺延
12) 관련 규정상 '국공관청' 전 혁신 고의사항의 통지 및 의견수렴만이 의무(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반덤핑법 제69조)에 있으나, 조사실은 동 조사 전(의) 과정에 걸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이익방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비판정에 앞서서도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통지 및 의견수렴을 진행함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 검토할 사항 >

○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 덤핑차액(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이)을 조사하여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함

관련 법규

(정상가격, 덤핑가격의 결정 및 가격비교 원칙 등)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① "정상가격"이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 "덤핑가격"이란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후략)

③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 시기 및 동일 거래단계(부상 공정도 거래단계)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해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① 영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상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 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근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가 이하로 판매한 양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당해 거래의 가중평균 원가 이하이고, 당해 원가 이하의 판매에 의하여 적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의 원가 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행정 제221조와 동일)
2.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관련 법규

②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 등에는 공급국인에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협정 제22조 주석2)

③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후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 (협정 제22조와 동일)

1. 조사대상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 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2. 원산지 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사 대상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 국가 안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21조 중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해당 물품은 덤핑,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중

수출국 국내시장 내에 통상적 거래에 의한 동종물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해당 가격이 대표성 있음을 전제로 동종 물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가격이나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금액과의 비교로 결정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24조 중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 공정한 비교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 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로 비교한다. 제반 판매조건, 파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을 포함하여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

관련 법규

《이용가능한 자료(A, Facts Available)의 사용》

○ 판서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① 제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판서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중

이해당사자가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부정의 예비·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후략)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II (제6.8조에 따른 입수가능한 정보) 중

1. ...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포함,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 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했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관련 법규

(덤핑률 산정방법 및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제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할 율을 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text{덤핑률} = \frac{\text{조정된 정상가격} - \text{조정된 덤핑가격}}{\text{피세가격}} \times 100$$
-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
 - ③ ... 조사대상기간에 수출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공급국별 그 밖의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를 제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②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 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중

당국이 조사대상공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2% 미만)과 협정 제6.8조에 따른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마진은 무시한다.

1.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선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 중 국 >

가. 동두이(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및 그 판매사

1) 공급자 개요 및 생산·판매 현황

- 동두이 및 그 판매사(이하 이 목에서 “피신청인”이라 함)는 중국 산둥성에 소재하며, xxx xxx xxx xxx xxx로 구성됨

< 피신청인 현황 >

피신청인 (생산자, 판매자)	역칭	조사대상물품 관련 활동	
		생 산	내수판매 수출
① 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동루이		
② Befar Group Co., Ltd.	베파르		
③ Binhua Haiyue (Qingdao) Trading Co., Ltd.	하이웨이		

- 동루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 xxx xxx xxx 등을 xxx xxx함
- 베파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 xxx xxx xxx 등을 xxx xxx함
- 하이웨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 xxx xxx xxx 등을 xxx xxx함
- 조사대상물품 판매에 있어 내수는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조사대상물품 생산 및 판매 경로 요약)

< 조사대상물품 판매 경로 >



- 피신청인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약 xxxRMB로, 한화 환산¹³⁾ 약 xxx원에 해당함

- 이 중 조사대상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xxx%(약 xxxRMB, 약 xxx원)이며, 내수·수출 시장별 매출액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시장별 조사대상제품 매출 비중 >

구분	조사대상제품 매출액 ¹⁴⁾ (RMB)	시장별 매출액 비중 (%)	
		내수	외국
피신청인 총합			
동우이			
베파르			
하이델			

- 피신청인의 조사대상제품 생산능력은 연간 xxxDMT¹⁵⁾이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설비능력을 초과 가동하여 연평균 가동률은 xxx%¹⁶⁾에 달함

- 피신청인의 최신 설비증설 시점은 xxx월(yyy), xxx월(yyy)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생산설비 신·증설(시운전 포함) 및 운휴 내역은 없음

- 한편, 피신청인은 조사대상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xxx, xxx, xxx 등 주요 원가 구성요소를 관계사로부터 조달하였는데, 그 경로는 다음과 같음

13) 조사대상기간 평균 매매기준율인 197.76원/RMB 적용 (출처: 한국은행)

14) xxx~xxx, xxx~xxx 간 내부거래 금액이 포함된 수치임

15) '최종 농축가'의 투입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정. xxx와 xxx는 최종 농축기를 각 xxx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능력은 xxx xxx 합산 xxxDMT/년, xxx xxx 합산 xxxDMT/년임

※ DMT(Dry Menn Tool): 수분포함 물질을 함유된 측정대상물(예: 수산화나트륨)의 순(純) 중량

농도 99%의 수산화나트륨 1톤(LMT, Liquid Mennic Tool) = 건조 수산화나트륨 0.99DMT에 해당

피신청인은 조사대상제품 생산·판매·제조원가를 모두 수분포함 원가량(LMT)으로 기록·관리 중이며, 이와 피신청인의 당장사실 조사 부문에서 '본'으로 기재된 항목들은 모두 'LMT'를 의미함

16) 각 사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구분	현재 생산능력(연간)		(비) 조사대상기간		평균
	DMT 기준	(A) LMT 환산	생산량 (DMT)	(B) A*100	
xxx (xxx% 수산화나트륨 생산)					가동률
xxx (xxx% 수산화나트륨 생산)					

< 관계사 간 원가 투입요소 공급 경로 >

원가 항목	투입요소 (용기·배치·내용)	공급자 (피신청인 또는 그 관계사)	구매자 (피신청인)
		①	
		②	
		③	
		④	
		⑤	
		⑥	

-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한 피신청인 외 5개사는 모두 xxx와 지분 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피신청인 및 원재료 등 공급 관계사 간 지분 현황 >

- 위와 같이 피신청인(베파르, 동우이, 하이델 3개사)은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조사대상제품의 생산·판매와 직접 연관되는바, 본 건에서 각 사를 단일경제체제로 간주하고 통합 덤핑률을 산정함

17) 베파르, 동우이가 각각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매용인 xxx 제조원가를 포함한 통합 투입원가 총액 대비 해당 투입요소가 차지하는 비중

3) 답변서 검토

- 아울러, 원제로 등 공금 관계사 5개사(①-⑤) 또한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특수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함

2) 답변서 분석 결과 (26점)

- 4. 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 (당초 답변기한 : 5.18.)^(※)
- 4. 28.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5. 6.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CCN 관련 의견수렴 기한 (별도의견 없음)
- 5. 11. : 피신청인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 (연장 후 답변기한 : 5.26.)
- 5. 26. : 답변서 접수
- 6. 17. : 제1차 보충질의서 송부 (당초 답변기한 : 6.24.)
- 6. 22. : 피신청인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차등 연장 (연장 후 답변기한 : 6.26., 6.30.)
- 6. 26. : 제1차 보충답변서 접수 (16개 정의항목에 대한 답변)
- 6. 30. : 제1차 보충답변서 접수 (13개 정의항목에 대한 답변)
- 7. 2. : 제2차 보충질의서 송부 (답변기한 : 7.7.)
- 7. 7. : 제2차 보충답변서 접수
- 7. 29. - 8. 5. : 예비심평을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예정)

[illegible]

19) 조사서는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달변기간을 정하여 결의서를 송부하면서, 합의라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만을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피관청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통지할 마 있으며, 해당 인내 문구는 제1차 및 제2차 모순점의서 송부 시에도 포함 - 명송위

3) 답변서 검토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영통계, 내수판매 및 대한민국 수출자료, 조정요소,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조사대상물품 설명자료 등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에 나누어 보충질의함
 - (1차 보충질의) 각 사 생산·판매·연구조직 운영현황, 판매사 간 거래실적(매일·비율 일체), 원재료 등 공급 관계사의 감사보고서 및 회계자료, 주요 거래처별 매출채권 보조원장, 조사대상물품 및 xxx xxx의 월별 원가 집계·배부내역 및 제조원가 명세서 등에 관하여 질의함
 - (2차 보충질의) 1차 보충답변 시 답변내역이 미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동류이의 xxx xxx xxx xxx 사유, 판매사 거래 중 누락된 xxx xxx xxx xxx, 특정 관계사로부터의 xxx xxx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함
 - 피신청인은 원질의 포함 총 세 차례 질의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 중 일부는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하거나 증빙과 서술이 불일치하였고, 일부는 보고를 누락하는 등, 명평을 산정에 필수적인 자료가 완전히 제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① 판매사 조달 원재료 등의 가격 검증자료 누락 >
- (조사실 질의) 조사실은 원재료, 에너지 등 조사대상물품 생산을 위한 주요 투입요소에 관하여 질의하고, 판매사로부터 구매한 투입요소가 있을 경우 그 구매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공급 관계사의 생산원가200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
 - (피신청인 답변)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주요 투입요소로서 xxx, xxx, xxx, xxx를 보고하고 공급자별 평균 구매단가 정보는 제출하였으나 특정 공급 관계사에 대해서는 생산원가의 핵심요소인 제조원가 보고를 누락하였고, 다른 공급 관계사 xxx xxx에 대해서는 양 사 간 특수관계 자체를 부정하여 구매가격의 적정성 증명을 방해하였음

20) 생산원가(Cost of Production) :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가격

구체적으로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등 제조원가 구성항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 판매사 조달 원가 투입요소 미보고 또는 과소보고 내역 >

투입요소	종류	종류	종류
①	관계사	관계사 COP 과수보고	관계사 COP 과수보고
②		책임일문	관계사 COP 미보고
③		관계사 COP 미보고	관계사 COP 미보고

[illegible]

② 관련, 피신청인은 회사의 일반정보 부문(원질서의 Section B) 답변에서는 xxx을 관계사로 분류하였으나, 원제로 구매내역 등 제조회가 부문(원질의 Section C) 답변에서는 xxx을 비관계사로 분류하고 생산원이 자로 일체를 미제출하였음과)

⑤ 결론, 피신청인은 ② 사례와 동일하게 일반정보 부문에서는 xxx을 관계사로 분류한 반면, 제조원가 부문에서는 같은 회사를 비관계사로 분류하고 생산원가 처리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23)

21)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22) 조서에는 보충정의를 통해 ^{헌법} 제101조 공금 관계에서의 감사보고서 및 회계자료, ^{헌법} 제102조 예산·비입실적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1의 모호함 및 제2의 모호성과 함께 제2의 의견청문은 ^{헌법} 제103조 제2항의 제1항에 의거하여 불응한 바, 헌재는 헌재의 예산·회계자료에 관한 공금관계에서의 감사보고서 및 회계자료의 제출을 미체한 반면, 헌재가 제1의 제출을 미체한 것은 xxx 다량 편입예산을 포함하고, 관계자로부터의 예산실적 자료는 xxx을 편제사에서 다시 제의하는 등 상호 모순관립정을 위하여 xxx으로부터 구체적인 xxx의 적정거의 여부결정을 명하였음을

23) xxx은 피신청인이 원집된 B-3(4)(관계의사 자문규약)에서 특수관계자로 보고한 xxx의 산하기업으로서, 피 신청인 스스로가 xxx xxx xxx xxx을 특수관계자 처대적으로 xxx에 공시한 바 있으나, 본 건 합의에 있어서는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을 비관계자 기대로 분류하고, 의정 구매가격 여부 결정에 필요한 생산원가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함

- (조사실 검토) xxx과 xxx는 조사대상물품을 구성하는 핵심요소24이며, 퍼신청인 제출 답변상으로도 두 품목이 통합 투입원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xxx%에 달함. 이러한 핵심요소 구매가격에 대하여 특수 관계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조사실은 그간 일관되게 원재료 공급 관계사의 생산원가 및 증빙을 요구해왔음.

· 피신청인은 xxx xxx 자회사인 xxx로부터 상당량의 xxx(26)을 공급받고도 해당 공급자의 xxx 제조원가를 xxx으로 임의 보고하였고, 치분·임원권을 공유한 또 다른 관계사인 xxx 및 xxx로부터 xxx의 xxx을 구매하고도 이들을 비관계사로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관계사 거래 실질을 어떻게 하였을

< ② 제조원가 산정의 비합리성 (반제품보다 낮은 완제품 제조원가) >

- (조사된 점의)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대상물품 제조원가가 적정 수준의 원재료 가격과 노무비, 제조경비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과 xxx xxx (xxx xxx)에 대한 제조원가명세서, 자재수불부, 제조원가 구성항목별 원가 배분표 등을 요구하였음

[illegible]

26)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25) 피신청인이 xxx xxx 제로공장에 부임한 xxx 또는 xxx, xxx, xxx이 있으나, 현재사 거래 이슈(xxx xxx xxx)가 있는 xxx xxx의 제로원이 대비 비증(약 xxx)만을 고려함

[illegible]

27) 조식대 상분봉(XXX, XXX) 생산위주로 투입되는 자기생산 XXX XXX XXX를 포함

- 한편, OilChem 자료는 xxx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건조 증량(DMT)과 수분포함증량(LMT)으로 나누어 권역별·일자별로 상세히 공표한 것으로, *신청인 사용 원재료와 농도(%)가 동일하여 별도 환산이 불요하고, *공장도 가격으로서 운송비 차감 등의 조정 또한 불요하며, *증지세를 제외하여 피신청인 원가자료와 세금처리기준을 일치시킨 것인바,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활용이 용이함(3233)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 등급(정상품, 동외품³⁴⁾), ② 농도(95% 이상 100% 미만³⁵⁾ 등), ③ 형태(플래이크³⁶⁾, 펠³⁷ 타입 등)를 제시함
- * CCN 구성 예시 : 농도 98%의 플래이크 타입 고체 수산화나트륨 정상품 ⇨ P095/PL

- 피신청인은 조사제시와 동시에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6) 정상가격

가) 공중국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공중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이하 "내수판매물품")의 판매가격(이하 "내수 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내수 판매자와의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을 실시함

32) 이에, 신청인도 본 건 조사제시 요청 시 중국산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증명자료(구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원재료 가격 정보)로서 OilChem 공표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가격 정보를 제시한 바 있음

참고로 중국산 화학제품 조사에 있어 OilChem 자료는 제조원가 또는 정상가격 관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출처의 정보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 시 OilChem 자료가 활용된 사례로는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원상(구세 20-2025-835),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원상(구세 20-2024-039) 등이 있음

33) 한편, 동 가격은 독립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협정 제22.11조는 조사대상공급자의 기록이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본 조는 반제품-완제품 간 원가 이권으로 동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관제사 거래로 인한 가격왜곡이 폐지된 시장가격이 된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최선의 대체적이며, *피신청인 당초 보고한 xxx 제조원가(xxx+xxx088/LMT)와 시장가격(cco088/LMT) 간 차이(아 xxx%)는 통상적 이용 수준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종합 고려하였음

- (1) 특수판매자와의 거래 검증 (Arm's Length Test)
 - 피신청인이 판매사에 자가소비 용도로 판매한 내수판매물품이 있을 시, 비판매사 대상 판매단가와 비교하여 내수판매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함³⁴⁾
 - 피신청인은 관계사인 xxx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xxx톤의 조사대상 물품(%)을 자가소비 용도로 판매한 바 있으나, 해당물품 판매단가가 비판매사 대상 동일모델 판매단가의 약 xxx%에 달하여 양 사 간 거래 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2)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 (COF Below Test)
 - 피신청인과 공중국 내 비관계 수요자 간 최종 거래지료를 바탕으로, 거래 전별 판매단가와 생산원가(=제조원가+판매비)를 상호 비교함³⁵⁾
 - 이때 비교의 기준이 되는 생산원가 중 '제조원가'의 경우, '4) 자료의 사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OilChem 공표 xxx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 평균가격을 원재료 가격으로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아울러 '판매비'의 경우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사용하되, 피신청인의 실제 판매조치 운영현황을 토대로 내수판매비를 조정³⁷⁾하고, 조사대상물품 판매와는 무관한 투자수익 등의 영업외 수익·비용은 제외하여 사용함

34) 특수판매자에 대한 최종평균 판매가격이 비특수판매자에 대한 최종평균 판매가격의 98%-102%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내수판매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35) 거래 전별 CCN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이하 "부담비")을 가산한 금액

36)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 방편에는 거래 전별 ①당장가격과 비교 방편과 ②당장가격의 비교 방편이 있는데, 판매정보별로 인도존(5%도, 상지5%)이 상이한 피신청인의 내수거래 특성을 고려, 거래 전별 순증상 가격을 공장도가격으로 환산한 후, 운송비를 가감한 CCN별 생산원가를 비교하는 ② 방편을 채택함

37) 피신청인 중 xxx는 별도 판매조치를 취하지 않고, xxx가 양 사의 조사대상물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한바(피신청인 제2사 보유당면서 중 3면표의 뒷면), xxx의 판매비를 원상에서 조사대상물품 내수판매에 관련된 비용들을 집계하여 xxx+xxx의 조사대상물품 내수판매비로 반영함

- 거래 건별 진증내역을 CCN별로 종합한 결과, 원가미만 판매물량이 총 내수판매물량의 20% 미만인 CCN의 경우에는 내수판매자로 일체를 원가미만 판매비율이 20% 이상인 CCN에 대해서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내수판매자료만을 정상가격 산정 기준으로 함

- 한편, 모든 내수판매물품이 원가미만으로 판매된 CCN에 대해서는 내수판매 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이하 'CV')을 산정확함이 원칙이나,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CCN이 덤핑차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³⁹⁾ 구성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없었음

(단위 : 원)

내수판매 CCN	내수판매물량 (A)	원가미만판매물량 (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100)	내수판매자료 사용 여부

나)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Viability Test)

- 통상거래가격 여부 진증을 통과한 피신청인의 내수판매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여부를 검증함⁴⁰⁾
- 먼저, 통상거래가격 여부 진증을 통과한 피신청인의 총 내수판매물량은 총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xxx%(이하 xxx예)로, 전체물량 측면에서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38) 구성가격은 한국수출도매(CCNY) 제조원가에 공급국 내수판매와 관련된 판매비 및 적정이윤을 가산한 것으로, 이어지는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결정에서 실시한 결과, 한국수출도매(CCNY) 공급국 내수시장에서는 전량 원가미만으로 판매되었거나, 원가이상으로 판매된 물량이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5% 미만인 경우, 해당도매(CCNY)에 대해서는 실제 내수판매가격이 아닌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39) 피신청인의 경우 CCN xxx xxx를 전량 원가미만 가격에 내수판매하였으나, 두 CCN 모두 대한민국 수출 가격이 없는 도매로서 덤핑차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0) 통상거래가격 여부 진증을 통과한 총 내수판매물량이 총 대한민국 수출물량 대비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개별도매(CCNY)별도 대한민국 수출도매(CCNY)와 동일한 내수판매도매(CCNY)가 있는지, 그 물량은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내수/한국수출 물량비가 5% 이상인 경우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에 미달한 CCN에 대해서는 구성가격(CV)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 다음으로 대한민국 수출도매(총 xxx개 CCN)별로 물량의 충분성을 검토한 결과, xxx 모두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물량이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5%를 초과한바, 개별도매 측면에서도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자료들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단위 : 원)

대한민국 수출 CCN	대한민국 수출물량 (A)	통상의내수판매물량 (B)	물량 비율 (C=B/A*100)	물량의 충분성 검증 통과 여부

다)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내국운임, 신용비용 및 포장비용을 조정함
- (내국운임) 피신청인은 관계사인 xxx⁴¹⁾과 운송 계약을 맺고, xxx에 운송 중계 수수료 xxx%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과 xxx 간 계약서에 수수료 요율 관련 조항이 부재하고, 실제 운임명세 상으로도 xxx이 비관계 운송회사에 지급한 비용과 xxx이 피신청인에게 청구한 금액 간 일정한 경합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피신청인이 xxx에게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은 제외하고, xxx이 비관계 운송 회사에 지급한 비용을 공제함⁴²⁾

- (신용비용) 피신청인은 거래처별 매출채권 회수기간⁴³⁾을 신용기간으로 보고(3개사 평균 xxx일)하였으나, 그 근거자료인 매출채권 보조원장 검증⁴⁴⁾ 결과, 표본거래 전부가 선수금 수취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함⁴⁵⁾함.

41) xxx xxx xxx xxx도, xxx이 직접 운송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비관계 운송회사에 화물 운송업무 등을 위주한 후, 운송원비(비관계 운송회사 청구액)에 수수료를 더하여 피신청인에게 청구함

42) 아울러, 대한민국 수출판매 관련 내국운임, 해상운임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비관계 운송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조정요소로 반영한 것을 고려함

43) 조사실은 조사대상공급자의 내수 또는 수출 거래 전여 배수 없고, 1개 거래의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등, 거래 건별 신용기간(대금회수일-출하일)을 인입이 주라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하여 거래처별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신용기간으로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44) 내수거래처 xxx개사(총내수판매물량 xxx%)에 대한 매출채권 보조원장 검증

45) 내수판매 매출의 부분시 또는 계약서 상에도 지급조건이 T/T in advance 또는 T/T Prepayment로 기재되어 있어, 조사대상물품이 선수금 수취 방식으로 판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매출채권 보조원장을 기준으로 선수금 회전일수 평균값을 계산
(비파드-xxx일, 동부이-xxx일, 하이텍-xxx일)하여 이를 신용기간으로 적용함

* 신용비용 = 신용기간(매출채권 등 평균회전일수) × 매출액 ÷ 365일 × 단기차입금 액자율

- (포장비용) 피신청인은 내수·수출물품 모두 포장타입에 따라 제품코드를 부여하고 동 코드별로 포장자제비 투입량 및 금액을 추적·관리하였음을 확인하고, 보고된 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대한국 수출 CCN	정상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임	신용비용	포장비용	

(단위 : RMB/톤)

가)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한국의 수입자 또는 수요자와 복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및 보험료, 은행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 증치세 미환급액을 조정함

-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및 보험료) 비관계사인 물류회사 및 보험사와의 계약서와 비용지급 증빙을 확인하고 보고된 금액을 조정함

- (은행수료) 실제 수수료 발생액을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조정함

- (신용비용) 피신청인은 대한국 수출물품의 신용기간(90)을 거래 건별로 추적·보고하였으나, 내수물품과 동일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하여 출하일이 아닌 판매일(송장 발행일)을 신용기간 산정기준일로 변경하여 이를 조정함

46) 피신청인이 보고한 대한국 수출물품 신용기간 = 대금회수일(선수금 일금일) - 출하일(선하증권 발행일)

- (포장비용) 내수물품과 동일하게 세부 수출모델별로 포장자제비 투입 물량 및 금액을 추적·관리하였음을 확인하고 보고금액을 조정함

- (증치세 미환급액) 조사대상물품은 수출 시 매입증치세가 전액 미환급되는 품목⁴⁷⁾으로, 대한국 수출 거래 건별로 증치세 미환급액이 누락 없이 보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대한국 수출 CCN	덤핑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임 해상운임 하선운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	증치세 미환급액 (C=A-B)	

(단위 : RMB/톤)

8) 파세가격

○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파세가격으로 적용함

9) 예비덤핑률

○ 피신청인에 대하여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3.66%임

대한국 수출 CCN	대한국 수출물량 (kg)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 차액 (C=A-B)	파세 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E× 수출비중)

(단위 : 톤, RMB/톤)

47)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수출세외에 대한 매입증치세를 전액 환급하고, 산업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출 제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차등 조정하고 있음. 조사대상물품은 이러한 수출제한 품목 중 하나로, 수출가격의 13%만큼 매입증치세가 미환급되며, 해당 금액만큼 실질적인 수출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증치세 미환급액 = 수출가격(세신자율 수출자의 FOB 수출가격 또는 무역상의 수출자의 세입가격)
× | 증치세 부과기준율(13%) - 수출 환급률(0%) |

48) 가중평균 덤핑률은 반올림 전 실제 수리도 산정한 결과이며, 표에 표시된 CCN별 가중평균 덤핑률의 단순 합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나. 스카이 임팩스(Skyey Impex Limited) : 미대용 공급자(무역장)

- 스카이 임팩스(이하 이 밖에서 "피신청인"이라 함)는 본 건 개시 당시 조사 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

1) 답변서 제출 현황 및 조사 경과 (26년)

- 4. 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⁴⁹⁾
- 4. 28.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기한 (미제출)
- 5. 6.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CCN 관련 의견수렴 기한 (별도의견 없음)
- 5. 18. : 덤핑부문 답변서 제출기한 (미제출)
- 7. 29. ~ 8. 5. :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중국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신청인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함⁵⁰⁾

3)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피신청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급국 내수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조사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49) 조사는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정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질의서 송부 시 협력 기한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통지한 바 있음

50) 피신청인은 무역상인 수출자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중국산 조사대상물품을 한국으로 상당량(중국산 총 수입물량의 xxx%) 수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함. 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가 무역상임이 확인되고, 해당 무역상이 허당한 물품의 원생산자가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신청인 무역상과는 별개로 원생산자가 자발대용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 무역상의 납품률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자발대용 생산자의 덤핑률을 적용하나, 무역상과 생산자 모두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무역상에 별도 덤핑률을 산정함(예: 중국산 원관 원리)

- (원재료비) OilChem이 중국 각 권역별로 공표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역대 수산화나트륨 출하가격 평균액(전국 평균)을 적용함
- (노무비 및 제조경비) 신청인의 농축공정 제조원가를 기반으로 노무비와 기타 경비는 한·중 양국 간 제조업 평균임금 및 1인당 구매력 GDP 차이⁵¹⁾를, 연료비와 전력비는 LNG 가격과 산업용 전력비 차이⁵²⁾를 반영, 조정함
- (판매관리비) 중국 내 알려진 생산자 3개사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원가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을 계산하고, 여기에 무역상인 xxx⁵³⁾의 판매관리비 비율을 가산하여 피신청인 취급 상품에 대한 공급국 내수시장에서의 총판매관리비⁵⁴⁾를 계산하되, 공장도 가격에 준하는 순(純)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운임 등의 판매비 항목은 제외함
- (이윤) 무역상 단계 이윤은 xxx의 매출원가 및 영업이익 자료, 생산자 단계 이윤은 중국 내 알려진 생산자 3개사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 적용함

- (조정요소)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격은 운임 등의 판매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純) 구성가격으로서, 추가적인 조정요소 공제는 불요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MT)

제조원가 (A=a+b+c)			판매관리비 (B)	이윤 (C)	순구성가격 (D=A+B+C)
원재료비(a)	노무비(b)	제조경비(c)			

51) 중국/한국 비율 = (노무비) 36.3%, (1인당 구매력 GDP) 43.7%, 출처 : Trading Economics, 2020년 설립된 글로벌 경제 데이터 플랫폼으로, 195개 국가-연세영역에 대한 거시경제 금융지표 데이터 및 권역별 제품

52) 중국/한국 비율 = (LNG) 76.6%, (전력비) 85.0%, 출처 : Global Petrol Prices, 2011년 설립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정보 전문기관으로, 150여개 국가-연세영역에 대한 자동차 연료, 전기요금 및 천연가스 가격정보 제공

53) 조사신청서에 명시된 중국의 알려진 생산자인 xxx, xxx, xxx의 2025년도 평균 기준 손익계산서 공제본

54) xxx : 본 건 조사에 유일하게 협조한 조사대상물품 내수 수출 판매 점진 무역상 (xxx xxx xxx xxx)

55) 알려지지 않은 공급국 내 통상산자의 판매관리비 + 무역상인 피신청인의 판매관리비

56) 관세청 수입통관자료(USD 또는 KRW), 신청인 노무비 및 제조경비(KRW), 원재료비(KRW) 또는 USD, 판매관리비 및 이윤(KRW) 또는 USD의 단위가 서로 달라 통산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USD"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함. 이하 다른 조사 미대용 공급자 및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위 기준 적용

4)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의 피신청인 물품 수입단가(CIF 가격)를 적용함
- (조정요소) 본 건 조사에 대응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동두이 및 그 관계사의 자료 중, 피신청인 물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수출단가 대비 조정요소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공제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초정된 덤핑가격 (A)	조정요소 거 (B)	조정된 덤핑가격 (C=A-B)

5) 파세가격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는 CIF 기준 가격 정보로서, 이를 피신청인의 파세 가격에도 동일 적용함

6) 예비덤핑률

- 피신청인에 대하여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22.21%임

(단위 : USD/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덤핑률 ($E=C/D \times 100$) ³⁷⁾
			22.21%

다. 유니라이온(Unilio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 비대응 공급자(무역상)

- 유니라이온(이하 이 목에서 "피신청인"이라 함)은 본 건 개시 당시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

1) 답변서 제출 현황 및 조사 경과 (26년)

- 4. 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결의서 송부
- 4. 28.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기한 (미제출)
- 5. 6.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CCN 관련 의견수렴 기한 (별도의견 없음)
- 5. 18. : 덤핑부분 답변서 제출기한 (미제출)
- 7. 29. ~ 8. 5. :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는 관세청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중국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신청인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함³⁷⁾

3)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피신청인과 동일한 유통구조를 지닌 스카이 임팩스(무역상)와 동일한 기준으로 순(純)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제조원가(A=a+b+c)	판매관리비 (B)	이윤 (C)	순구성가격 (D=A+B+C)
원재료비(a)	노무비(b)	제조경비(c)	

³⁷⁾ 피신청인 또한 무역상인 수출자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중국산 조사대상물품을 한국으로 상당량(중국산 총 수입물량의 300%) 수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함. 이하 무역상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도 덤핑률을 산정,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주 50 참조

4)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의 피신청인 물품 수입단가(CIF 가격)를 적용함

○ (조정요소) 동무이 및 그 판매사의 자료 중 피신청인 물품과 동일한 모델의 수출단가 대비 조정요소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공제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조정 전 덤핑가격 (A)	조정요소 계 (B)	조정된 덤핑가격 (C=A-B)

5) 과세가격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는 CIF 기준 가격 정보로서, 이를 피신청인의 파세 가격에도 동일 적용함

6) 예비덤핑률

○ 피신청인에 대하여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19.93%임

(단위 : USD/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19.93%

라. 그 밖의 공급자

1) 자료의 사용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 산정 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 가능한 관계로 가중평균 대상 덤핑률이 존재하지 않는바, 합리적 대안으로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신청인 자료, 조사에 협조한 공급자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적용할 덤핑률을 별도로 산정함⁵⁹⁾

2)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OriChem 발표 원재료 가격에 *신청인의 농축공정 제조원가를 기반으로 한 중 앙국 간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 노동비와 제조경비, *중국 내 알려진 생산자 3개사의 판매관리비 평균액(운임 제외), *중국 국가 통계국 발표 '25년도 화학제조업 평균이윤을 가산하여 순구상가격을 산정함

59) 중국의 조사대상공급자 3개사 중 2개사(스카이 일렉스, 유나이티드)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원면 이용 가능한 자료를, 나머지 1개사(동우이 및 그 판매사 :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제조원가 핵심입력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59) WTO 반덤핑협정 등은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 산정 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공급자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공급자에게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사당국의 재량에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

이때, 조사청은 가중평균 대상 덤핑률이 부재한 경우 "다른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새로 산정하거나(동상 부인), *기존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하는 등(동상 부조채위) 조사 진행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은 개별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이 모두 0 또는 미소미진(2% 미만)이거나 원면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산정하여 있어 개별 공급자의 덤핑률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협정공제에 대하여 자의미제어)

미국 1005년 판세법 제1752(a)(2)(D) (19 USC 1675b(2)(D)) 국문 오기
제1752(a)(2) 모든 수출수입자의 덤핑(여유) "0" 또는 미소미진(2% 미만)인 경우, 조사당국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을 산정하여 있어 개별조사 결과의 평균을 포함한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
※ (해문) DUEZPTON - If the estimated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 say 0% - is negligible, then --

60) 본 건 조사당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미참여한 스카이 일렉스, 유나이티드 모두 무역상의 경우 생산자 비용에 무역상 비용을 가산하여 구상가격을 산정하였으나, 그 밖의 공급자는 모두 생산자인 판매자로 간주하고 알려진 생산자의 비용정보만을 토대로 구상가격을 산정함

- (조정요소)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격은 공장도 가격에 준하는 순(純) 구성가격으로서, 내륙운임 등의 추가적인 조정요소 공제는 불요함
- 한편, 조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로서 코트라(KOTRA)가 조사한 공급국 내수시장자료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조사대상기간(25.1.1.~25.12.31.) 동안의 내수판매가격을 평균한 것이 아닌 특정 시점의 공표된 가격정보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원재료 가격 변동 폭이 상당하였던 점⁶¹⁾을 감안할 때 대체 정보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제조원가(A=a+b+c)				(단위 : USD/톤)	
원재료비(a)	노무비(b)	제조경비(c)	판매관리비 (B)	이윤 (C)	총 구성가격 (D=A+B+C)

3)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조사대상공급자 3개사를 제외하고 생산자인 수출자로 파악되는 xxx개사의 조사대상기간(25.1.1.~25.12.31.) 동안의 평균 수입단가(CIF 가격)를 적용함
- (조정요소) 본 건 조사에 대응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자료 중, 그 밖의 공급자 수출상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수출 단가 대비 조정요소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공제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조정 전 덤핑가격 (A)	조정요소 계 (B)	조정된 덤핑가격 (C=A-B)

61) xxx 백세 수산화나트륨 중국전역 평균출하가격(USD/DMT) : 최저 xxx(25.12월), 최고 xxx(25.2월)

4) 과세가격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는 CIF 기준 가격 정보로서, 이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과세가격으로도 동일 적용함

5) 예비덤핑률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17.58%임

(단위 : USD/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17.58%

< 대 만 >

가. 포모사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 미대용 공급자(생산자)

- 포모사(이하 이 목에서 "피신청인"이라 함)는 본 건 개시 당시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

1) 답변서 제출 현황 및 조사 경과 (26년)

- 4. 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⁶²⁾
- 4. 28. : 조사장여 신청서 접수기한 (미제출)
- 5. 6.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CCN 관련 의견수렴 기한 (별도의견 없음)
- 5. 18. : 덤핑부분 답변서 제출기한 (미제출)
- 7. 29. ~ 8. 5. : 예비답평를 산정내역 동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 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피신청인 공시 재무제표, 신청인 제조회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답평를 산정함

3)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피신청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급국 내수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으므로 조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62) 조 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8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불응시 송부 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통지한 바 있음

- (원재료비) 화학 정보제공기관인 Chemical Market Analytics⁶³⁾가 공표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대만 내수가격 평균액을 적용함
- (노무비 및 제조경비) 신청인의 농축공정 제조원가를 기반으로 노무비와 기타 경비는 한국-대만 간 제조업 평균임금 차이와 1인당 GDP 차이⁶⁴⁾를, 연료비와 전력비는 LNG 가격과 산업용 전력비 차이⁶⁵⁾를 반영하여 조정함
- (판매관리비)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대만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서 재무제표가 공시되어있는데, 피신청인의 '25년 기준 공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가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을 계산함
- (이윤) 피신청인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되,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적자 운영된 관계로 내수판매물품이 원가 이상에 판매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거래에서의 이윤율을 산출하기 어려워, 대만 내 다른 중립화회사인 xxx⁶⁶⁾의 공개된 재무제표를 추가 활용하여 양 사의 가증평균 이윤율을 산정·적용함⁶⁷⁾
- (조정요소) 내수판매 시 내복운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B to B 거래품목 특성상 대만 내 운임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 정상가격 조정요소로 적용하지 않고,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덤핑가격 조정요소에도 반영하지 아니함

63) Chemical Market Analytics(CMA) : 1979년 최초 설립된 글로벌 화학시장 분석기관으로, 30여 개 국가 및 관세영역의 기초화학제품 200여 종에 대한 수급·가격·미전 및 고의 데이터 제공

64) 대만/한국 비율 = (노무비) 61.2%, (1인당 GDP) 105.4%

출처 : Trading Economics 및 대만 공적통계 보털(eng.stat.gov.tw)

65) 대만/한국 비율 = (LNG) 67.2%, (전력비) 161.7%, 출처 : Global Petrol Prices

66) 대만의 대표적인 석유화학·플라스틱 원료 제조기업으로, 석리상 석유화학제품 생산비율이 높으나, 반도체용 세정제 및 도금액 등 무기화학제품(수산화수소, 황산 등)도 생산함

67)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는 이윤 등은 조사대상물품자의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하되, 이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 수 있다고 규정. 본 건은 다음 중 (iii) 방식 적용

(i)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또는 관세영역)의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종류의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련하여 발생되고 관련된 실제 금액,

(ii) 조사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또는 관세영역)의 국내시장에서 동종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련하여 발생되고 관련된 실제 금액의 가중평균,

(iii)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본,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또는 관세영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종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가격으로 설정된 이윤율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제조원가(A=a+b+c)		판매관리비(B)	이윤(C)	정상가격(D=A+B+C)
원재료비(a)	노동비(b)			

4)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의 피신청인 물품 수입단가(CIF 가격)를 적용함
- (조정요소) 본 건 신청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대만(XXX)~한국(XXX) 간 해상운송 및 수출부대비용 전직서를 이용하여 이를 공제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조정 전 덤핑가격(A)	해상운송비 및 수출부대비용(B)	조정된 덤핑가격(C=A-B)

5) 파세가격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는 CIF 기준 가격 정보로서, 이를 피신청인의 파세 가격으로 동일 적용함

6) 예비덤핑률

- 피신청인에 대하여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38.89%임

(단위 : USD/톤)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덤핑가격(B)	덤핑차액(C=A-B)	과세가격(D)	덤핑률(E=C/D×100)
				38.89%

나. 그 밖의 공급자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 산정 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유일한 조사대상공급자인 포모사가 조사에 반대응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가중평균 대상 덤핑률이 존재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조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덤핑률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함
- (정상가격) 조사실은 코트라(KOTRA)로부터 대만 내수시장 조사자료를 입수하였으나, 이는 '25년 중 일부 기간의 가격 분포 정보'에 불과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의 대만 내수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자 명칭, 유형(생산자·부역상 등) 및 소재지 정보 또한 파악할 수 없어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 (덤핑가격 및 덤핑차액)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통해 그 밖의 공급자별 수입단가 확인은 가능하나, 각 사(총 XXX개사) 물품의 형태와 단가가 상이한 상황⁶⁸⁾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만 내수시장의 형태별 가격정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만으로는 덤핑차액 산정이 불가능함
- 이와 같이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 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가 부재하고, 대만의 그 밖의 공급자 모두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⁶⁹⁾에서, 조사실은 합리적 방안으로서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XXX%를 차지하는 포모사의 예비 덤핑률인 38.89%를 이용가능한 자료로서 그 밖의 공급자에게도 동일 적용함

68) 코트라 자료 예시 : '25.XXX-XXX월 최저 XXX - 최고XXXTWD/kg의 XXX-XXXUSD/톤 등 (모두 XXX 형태)

69) 그 밖의 공급자 A사 : XXX 형태, 수입물량 XXX톤, 수입단가 XXXUSD/톤

B사 : XXX 형태, 수입물량 XXX톤, 수입단가 XXXUSD/톤

70) 조사실은 본 건 조사대상 당시 포모사를 대만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공고한바,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도 조사원의를 통한 개별 덤핑률 산정요청 기회가 부여함을 안내(대만 당국 및 서한 발송, 관료 자료,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하였으나, 대만의 어느 공급자도 조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